

수원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나631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나63151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 12 선고 2022가단20871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밝음

담당변호사 채승준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림

담당변호사 강승우, 김남오, 안기혁, 차홍순, 임효승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동북아 담당변호사 권우상

변론종결 2024. 9. 4.

판결선고 2024. 10. 16.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 12. 선고 2022가단20871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제1심공동피고 C은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D 잡종지 634㎡에 관하여 2021.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21. 9. 10. 접수 제469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제1심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현지, 판사 김혜진, 판사 박평수